제348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(제1차 교육위원회) 2016. 6. 14.(화) 10:00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덕환

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- 1. 발 의 자 : 이 숙 애 의원 등 7인
-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O 발의일자 : 2016년 5월 31일

O 회부일자 : 2016년 6월 1일

3. 제안이유

「진로교육법」과 동법 시행령이 제정·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가. 진로교육 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4조)
- 나. 도교육청 진로교육센터 설치・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8조)
- 다. 지역 진로교육 센터 설치・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9조)
- 라. 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0조)
- 마. 도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개정(안 11조)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「진로교육법」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조항의 수정 및 불필요한 항을 삭제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개정한 것으로.

- 진로전담교사의 자격 및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「진로교육법 시행령」제4조에 따라 조례안의 제2조제6호와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진로 전담교사 정의 및 배치・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삭제하고,
- 지역진로교육센터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「진로교육법」제16조에 따라 조례안 제8조 제1항과 제2항, 제9조제1항의 '진로교육지원센터'를 '진로교육센터'로 하며,
- 「진로교육법」 제17조의 지역진로교육협의회도협의회 구성·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안 제11조제1호의 '검토'를 '지원'으로 수정한 것은 상위법에 따른 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며,
-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일부용어를 개정하고, 의미전달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문구를 개정한 것은 내용적인 측면에서나 법체계상 문제가 없어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